



새롭게 도약하는 희망 달서

- 대구광역시 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20. 1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보건행정과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보건행정과장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- 달서구 관내에는 약 11,743명(2019. 12월말 기준)의 여성장애인인 거주하고 있으나, 지역 내에는 여성장애인의 성별 특성인 임신·출산 등에 대한 보건·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실정입니다.
- 따라서 여성장애인인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,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·운영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-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는 여성장애인의 임신·출산 등 산부인과 진료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,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성별특성 및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지원사업의 실효성 및 필요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
- 안 제5조는 친화병원 지정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, 친화병원은 분만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달서구 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여성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.
- 안 제6조는 친화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, 지정기간과 연장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·운영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 - 이와 관련하여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2조 일부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.(제2조제4호를 제5호로, 제4호 신설)
- 안 제7조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, 친화병원에 여성장애인의 성별 특성 및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여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, 성별 질환 관리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

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,
- 2020년 1월 17일 조례·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,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·운영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』 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0082009
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20. 1. 23.
제 출 자: 달서구청장
(보건행정과장)

1. 제안이유

여성장애인의 신체적,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실태조사(안 제4조)
- 다. 친화병원 지정 대상(안 제5조)
- 라. 친화병원 지정 등(안 제6조)
- 마. 사업 지원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1)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7조, 제9조, 제32조
- 2)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8조
- 3) 「의료법」 제3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제22조, 제104조

나. 비용추계서: “생략” (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)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19. 12. 23. ~2020. 1. 13.) 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 평가 검토 결과: 원안 동의
- 5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 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여성장애인의 신체적,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여성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,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달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.
- “여성장애인 친화병원”(이하 “친화병원”이라 한다)이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여성장애인의 임신·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·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실태조사) ① 구청장은 달서구 내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친화병원 지정 대상) 친화병원은 분만 시설을 갖추고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달서구 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.

제6조(친화병원 지정 등)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신체적·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친화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② 친화병원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운영실태, 여성장애인 이용 만족도 등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심의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.

제7조(사업 지원) ① 구청장은 지정된 친화병원에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지원
2. 여성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
3.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지원
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」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장애인복지법

제7조(여성장애인의 권리보호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생략

제32조(장애인 등록) ①장애인,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(이하 "법정대리인등"이라 한다)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등록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(이하 "등록증"이라 한다)을 내주어야 한다.

②~⑧ 생략

□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, 장애 유형 및 정도, 모·부성권 보장,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
③~⑤ 생략

제8조(장애인 건강관리사업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,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(이하 "장애인 건강관리사업"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생략

□ 의료법

제3조(의료기관) ①이 법에서 "의료기관"이란 의료인이 공중(公衆)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·조산의 업(이하 "의료업"이라 한다)을 하는 곳을 말한다.

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~2. 생략

3. 병원급 의료기관: 의사,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병원

나.~다. 생략

마. 종합병원

③ 생략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 생략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~나. 생략

다.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~차. 생략

3.~6. 생략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~②생략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

친화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의료서비스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

2. 관련조문

제7조(사업 지원) ① 구청장은 지정된 친화병원에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지원
 2. 여성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
 3.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지원
 4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3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해당

4. 미첨부 사유

-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에 대해 지정연도에만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(1회, 40백만원 정도)하고 장애인식교육 지원비는 5년간 지원 예정(연 1백만원 정도)
- 따라서 지원예상액은 5년간 45백만원으로,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“비용추계서 생략” 임.

5. 작성자: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호수